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698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63****-1*****)

 2. B (58****-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 8. 25. 선고 2010가단2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6.

판 결 선 고 2011. 6.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630원, 원고 B에게 32,265,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1.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3/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279,000원, 원고 B에게 51,37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10. 1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09. 10. 11. 17:35경 00&0000 무쏘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동 '\$\$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00공단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 ~ 94km(제한속도 70km/h 도로)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D 운전의 구미&0000 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바람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복합함몰골절로 인한 악성 뇌부종 등으로 같은 달 13.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C이 경적까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설령 C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C은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우선,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로는 피고차량 진행방향으로 00공단 방향에서 사고지점 약 10m 전까지는 중앙선에 가드레일이, 사고지점 부근은 중앙선 부위에 사선으로 표시한 안전지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C이

사고 직전에 경적을 울리고 사고지점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망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7,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경찰에서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 채혈조사를 하였으나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1% 이하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구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부근에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로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왕복 8차로 도로와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왕복 2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실상의 4거리 교차로인데, 왕복 8차로 도로 쪽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왕복 2차로 도로 쪽으로는 교차로 통과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이 2차로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쪽으로 가려는(8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선 침범의 무단횡단이 된다) 차량들이 다수 있었고, 실제 구미경찰서도 이와 같은 주변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의 교차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한 점, ② C은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멀리서' 위와 같은 무단횡단 차량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였기 때문에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움직임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이 당심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알고 경적을 울려서 오토바이가 멈추어 서므로 그대로 있을 줄 알고 계속 진행하였던 것인데, 망인과 사인(sign)이 맞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정과, 망인이 피고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무모하게 그 앞을 가로질러 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에 비추어, 두 사람은 사고 직전 짧은 순간이나마 이 사건 사고지점을 먼저 지나가려는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속하거나 3, 4차로로 피행하는 등의 충돌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진행한다는 의미로 경적만 울린 채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93 ~ 94km로 그대로 과속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게 된 점, 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격 직후 약 52m나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전도된 점, ⑥ 만약 C이 사고지점 전에 있는 00공단 방향의 신호대기 정지선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하였더라면 감속이나 피행조치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망인 또한 평소 위 신호대기 정지선의 차량정지상황을 알고 무단횡단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C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차량이 사고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위 무단횡단을 마쳤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무단횡단 의도를 알았을 지점부터라도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속하거나 3, 4차로로 피행하는 등의 충돌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거나 손해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C은 망인의 오토바이가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멀리서'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시속 70km 이하로 감속하면서 충격할 때와 시속 93 ~ 94km의 진행속도 그대로 충격할 때는 피해정도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며 이미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거나 손해확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차량이 면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대법원 1999.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은 모두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다만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설 것으로 설블리 예상하고, 과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적만 울린 채 진행하였던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라. 책임의 제한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는 주로 앞서 본 망인의 중앙선 침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가동기간 : 망인은 당시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일인 2009. 10.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 3. 31.까지

(2) 소득실태 : 구미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동기간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시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서 2009. 10. 11.부터 2010. 1. 10.까지는 1일 66,622원, 그 후로는 원고가 구하는 2010. 1.경의 위 노임단가인 1일 68,965원을 적용한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2,656,304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장례비

원고 A이 지출한 3,000,000원(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20%

라. 계산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242,656,304원 \times 0.2 = 48,531,260원

(2) 원고 A의 장례비 : 3,000,000원 \times 0.2 = 6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8,000,000원, 원고들 각 4,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망인의 재산은 원고들이 1/2씩 상속하였다.

(2) 상속재산액 : 56,531,26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48,531,260원 + 위자료 8,000,000원) × 각 1/2 = 각 28,265,63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630원(재산상속액 28,265,630원 + 장례비 600,000원 + 본인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32,265,630원(재산상속액 28,265,630원 + 본인 위자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시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는 주요판결 게재 시 생략함.